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59
----------	------

202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박강산·전병주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강산 의원)

1. 제안이유

- 만성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복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나.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병원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과 순회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교육감의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박강산, 전병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059호로 발의되어 2023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¹⁾ 전국에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8%에 해당하는 1,956명, 서울시에는 303명의 건강장애학생이 있습니다.²⁾

- 건강장애학생의 질환 중 소아암(백혈병, 뇌종양 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³⁾ 소아암은 완치되더라도 치료 기간이 최소 3~5년인바 건강장애학생은 장기 치료로 인해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⁴⁾
-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장애학생이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학교 복귀 시에는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4조)를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병원학교(안 제6조), 원격수업(안 제7조), 순회교육(안 제8조), 출결·성적처리 등(안 제9조), 학교 복귀 지원(안 제10조), 교원연수 등(안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13조)을 규정하여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2023. 4. 1.자 특수교육통계 기준

3) 건강장애학생 이해자료(인천시교육청)

4) 보도자료: 아파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 “건강장애 학생 교육 사각지대 없애야”(동아일보, 2022.7.21.)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의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병원학교”를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바,

현재 법령상 “병원학교”를 정의한 규정은 없으며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에서 병원학교를 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병원학교는 타시도와 달리 교육청과 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은 병원학교를 파견된 학급 형식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파견학급 형태”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2681, 2023. 8. 22.).

- 이에 대해 살펴보면,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37개의 병원학교 중 서울시 내 10개의 병원학교는 병원 자체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서울시교육청의 행·재정 지원을 받음), 이와 달리 타시도 병원학교는 교육청 소속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파견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 내 병원은 타시도와 달리 규모가 커, 병원학교 학생 중 서울시 학생은 약 20%에 불과하고 타시도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 파견학급으로 운영 시 매우 많은 파견학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⁵⁾,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서울시 내 병원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호에서 “과견 학급 형태의” 는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3) 병원학교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병원학교의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병원학교 건강장애 학생의 학적과 출결 사항 등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6조는 서울시 내 10개의 병원학교의 효과적인 운영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표-1] 서울 병원학교 현황

연번	병원학교명	2022년 학생 수(명) ⁶⁾
1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75
2	고대구로병원 병원학교	32
3	원자력병원 병원학교	24
4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원학교	136
5	서울아산병원 병원학교	64
6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	60
7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59
8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학교	6
9	한양대병원 병원학교	10
10	고대안암병원 병원학교	6
계		472

4) 원격수업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실시간 양방향 수업 방식으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며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갖추어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6) - 병원학교 학생 중 서울시 학생은 약 20%임.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지정 병원으로, 고대안암병원은 22년 10월 말 신설로 이용 학생 저조.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과 출결 사항 등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육감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⁷⁾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⁸⁾

안 제7조에서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원격수업기관(꿀맛무지개교실)을 포함하여 원격수업 관련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현황⁹⁾

(단위: 명)

학급 수	전체 강사 수 (파견교사 수)	재적 학생 수			일 평균 이용 학생 수	개별학생 평균 이용일 수
		건강장애	요보호	계		
14학급	13(4)	214	50	264	146	20일

7) 제25조(순회교육 등)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9) 2023. 4. 1.자 특수교육통계 기준

5) 학교 복귀 지원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장은 학생들이 건강장애학생을 이해·배려하도록 지도하며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원만한 학교 복귀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강장애학생의 대부분은(303명 중 299명) 일반학교에 속해 있어, 특수교육 대상자인 건강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복귀할 경우 또래 학생 및 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안 제10조에서 건강장애학생의 순조로운 학교 복귀를 위한 교육감, 학교장,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한 것은 건강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 및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표-3] 서울 건강장애 학생 현황¹⁰⁾

(단위: 명)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유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1	2	1	-	4	111	94	94	299	303

10) 2023. 4. 1.자 특수교육통계 기준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과견학급 형태의” 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59
----------	------------

제안연월일 : 2023년 12월 1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내 병원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2호에서 “과견학급 형태의” 를 삭제함.

2. 주요내용

- “과견학급 형태의” 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를 “설치된”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p> <p>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원안과 같음)</p> <p>2. ----- ----- ----- 설치된 -----</p> <p>-----.</p> <p>3.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하고 치료 종료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

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병원 및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병원학교) ①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유급 방지, 또래 관계 및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소속 학교는 통보된 건강장애학생의 병원학교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병원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 양방향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소속 학교는 통보된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기관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①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은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평가는 건강장애학생이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학교 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위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건강장애학생의 질병과 학교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의 원만한 학교 복귀를 돕는다.

제11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출결, 성적처리 등에 대해 소속 학교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위해 관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병원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장과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는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